

# 스웨덴 보육의 배경과 현황\*

Background and Present State of Swedish Child-care System\*

권정윤(Jeong Yoon Kwon)<sup>1)</sup>

한유미(You Me Han)<sup>2)</sup>

## ABSTRACT

Sweden has one of the world's most progressive and comprehensive childcare systems; synonymous with quality, it is the envy of many other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background factors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of the Swedish childcare system and the current childcare policy and system. This study found that underpinning the Swedish childcare system is not only the expectation that men and women will participate equally in the workforce, child rearing, and domestic life but also an awareness of the right of children to development and education. Implementation of the Swedish childcare policy has provided for easy access and affordable childcare centers following principles of childcare universalism. This provides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Korean childcare policy and system.

**Key Words** : 스웨덴(Sweden), 공보육(Public childcare), 보육(childcare), 보육정책(childcare policy).

##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보육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공보육은 보육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육서비스로 보고 보육책임을 가정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보육의 개념과 범위에는 논란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보육은 국가나 사회가 보편주의 보육이념에 입각하여 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지니고 보육시설을 설치할 뿐 아니라 종사자의 인건비와 아동의 수용비까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효정, 2003). 자유주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CS2001).

<sup>1)</sup>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sup>2)</sup> 호서대학교 아동학 전공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 Me Ha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Hoseo University, CheonAn-City, Cheonan 330-713 Korea E-mail : hanym@office.hoseo.ac.kr

의 국가에서는 대개 사보육이 중심이 되고 공보육의 선택적 우선 대상은 요보호 아동으로 선별적으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비해,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동과 부모의 복지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요보호 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갑수, 2004).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스웨덴은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로서 공보육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보육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어, 부모의 취업여부나 소득수준, 합법적 결혼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한다는 보편주의 보육이념에 따라 대부분의 아동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일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보육비용의 대부분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4-5세 모든 아동에게 하루 3시간씩 무상으로 보육이 제공된다(Swedish Institute, 2004). 또한 영아의 경우 16개월에 달하는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통해 가정에서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괄적인 가족지원정책으로 공보육을 실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웨덴의 보육제도는 많은 면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자체가 보육에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어 각 지역에 적합한 보육정책을 실시하며, 취학전 보육시설인 프리스쿨과 개방형 프리스쿨, 가정보육 뿐 아니라 학령기 아동을 위한 레저타임센터 등 다양한 보육유형이 존재하여 각 아동의 특성이나 가정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취학전 유아의 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된 국가가 거의 없음에 비해, 스웨덴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라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스웨덴의 보육제도는 세

계 여러 나라에서 보육제도 및 정책을 논의할 때 모범적인 제도로 자주 인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도 스웨덴의 보육제도를 소개한 연구들(신동주, 2002; 양옥승 외, 1998; 이옥, 1996; 장미경, 1999; 정채옥, 2000)이 몇 편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오래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 많아 스웨덴 보육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모가 취업하거나 학업중인 경우에 보육을 제공하였지만, 2001년부터는 비취업 부모, 2002년부터는 육아휴직중인 부모에게도 확대 제공하였다(Swedish Institute, 2004). 그러나 이와 같이 최근에도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는 스웨덴의 보육정책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둘째, 국내에서 이루어진 보육과 관련된 스웨덴 자료들은 스웨덴의 보육제도가 우리의 현실과는 지나치게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 점도 없지 않았다. 이는 그간의 연구보고들이 스웨덴의 보육제도나 보육현황을 소개하면서도 제도 전반을 다루기보다 연구 목적에 따라 단편적으로 필요 영역만의 자료를 인용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이옥, 1996). 그러나 한 나라의 보육제도는 단순히 유아들을 위한 행, 재정적 책임 및 권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시대, 사회적 배경 및 변화와 이에 따른 유아기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공보육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의 사회적 배경과 아동, 가족 및 보육에 대한 관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공보육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에서 이루어진 스웨덴 보육관련 연구들은 문헌조사나 이차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

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스웨덴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현장을 시찰·조사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병행하여 스웨덴의 공보육제도가 형성된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현재와 같은 스웨덴 공보육이 이루어진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스웨덴의 보육행정 및 주요 보육정책(재정 및 교사양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스웨덴의 다양한 보육유형들은 각기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 <연구문제 4> 스웨덴 공보육 실태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결과는 선진보육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에 적절한 공보육 모델을 설정하고 보육정책을 입안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 방법

### 1. 문헌분석

스웨덴의 보육관련 서적, 연구논문, 보고서 등의 문헌과 스웨덴 중앙정부(교육부, 국립교육원, 국립교육진흥원) 및 지자체(스톡홀름, 예테보리, 나카)의 보육기구의 홍보자료 및 인터넷 홈페이지

〈표 1〉 공식적 자문회의 일정 및 자문대상

일시	자문대상	자문내용	
1차	2월 2일 예테보리 대학교	교수 Samuelsson, I. P.	- 보육역사
		교수 Sheridan, S.	- 보육이념
		명예교수 Karrby, G.	- 보육의 질
		교수 Giota, J.	
	2월 4일 국립교육원	중앙 공무원 Wilkman, U.	- 보육전달체계와 평가 제도
		중앙 공무원 Blix, G. H.	- 보육정책의 변화
		중앙 공무원 Olsoon, L.	- 국립교육원의 역할
	2월 5일 국립학교진흥원	중앙 공무원 Kempe, A.	- 국립학교진흥원의 역할
		중앙 공무원 Sedvall, B. M.	
	2월 6일 예테보리 지자체	지방 공무원 Båth, E. L.	- 예테보리의 보육정책
		지방 공무원 Ivarsson, I.	- 예테보리보육평가제도
	2월 10일	교 포 천순옥	- 스웨덴 보육의 전반
5월 24일 교육과학부	장관수석보좌관 Korpi, B. M.	- 보육관	
	5월 25일 스톡홀름 교원대학교	교수 Bjorneloo, I.	- 보육현황
부총장 Johansson, L.		- 새로운 교사 양성제도	
2차	5월 26일 나카 지자체	정치인(보수당) Gerdau, M.	- 정당한 보육정책 차이
		재정 담당 Wichager, M. I.	- 보육예산 조달과 집행
		총책임자 Jörbeck, A.	- 나카의 보육역사
		재정 담당 Carlssou, B.	- 바우처 제도
		인사 담당 Zander, B. U.	- 나카의 교사양성과 관리
5월 28일 예테보리 지자체	가정보육지도원 Ann-Marie	- 가정보육모의 관리감독	

지와 개별 보육시설(예, Fräntorpsgatans 프리스클 등)의 안내책자 등을 분석하였다. 스웨덴어 번역은 한국 외국어대학교 스웨덴어과와 스칸디나비아학회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 2. 현지시찰

### 1) 전문가 자문

문헌연구로 확보하기 어려운 세부정보는 2004년 1월 30일-2월 11일 그리고 5월 22일-6월 2일 등 2회에 걸쳐 스웨덴의 스톡홀름(Stockholm), 예테보리(Göteborg), 나까(Nacka) 지자체 등 3개 지역을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을 시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중앙정부 수준의 보육정책을 알기 위해서이다. 또한 지방분권화가 강한 스웨덴에서 보육 업무는 광역자치단체(Lan)가 아닌 289개의 기초자치단체(Kommun)의 영역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육정책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민당 우세 지역인 예테보리 지자체와 보수당 우세 지역인 나까 지자체를 각기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위해 포커스 집단면접의 형태로 총 5회에 걸친 공식적인 회의를 실시했지만, 필요시 비형식적인 자문 또는 귀국 후 이메일을 통한 자문으로 보충하였다. 주요 자문대상은 스웨덴 국가 수준 취학전 교육과정(Lpfö 98)의 개발을 주도한 스웨덴 Göteborg 대학교 교육학부 교수진, Stockholm 교원대학교 부총장 및 교수, 스웨덴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과 국립학교진흥원(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 등 중앙정부 소속 보육 공무원과 지자체 소속 보육공무원, 스웨덴에서 장기 거주한 보육관련 한국인 등이며,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자의 전공 분야나 업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문을 구했다.

### 2) 면접

이외에도 보육시설의 원장과 교사, 그리고 보육아동 및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보육에 관한 견해, 보육 만족도, 보육시설 선택 이유, 보육교사 지원 동기 등에 관한 면접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 보육시설 3곳과 개방형 보육시설 2곳, 사립 보육시설(부모협동) 2곳, 가정보육시설 1곳, 레저타임센터 1곳을 시찰하고 각 시설에서 원장과 교사 1인, 부모 1-2인과 아동 1-2인을 면접하였다.

## Ⅲ. 스웨덴 공보육의 배경

### 1. 출산율 변화

1983년 스웨덴의 출산율은 1.6의 최저 수준을 나타냈으나 1990년대 초 서유럽 최고 출산율인 2.1로 증가하여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이러한 출산율 증가는 여성취업률이나 동거, 이혼, 별거율과 출산율이 반비례 한다는 통례와 달리 여성취업률, 동거, 이혼, 별거율이 모두 높은 상태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그 원인은 공보육제도나 가족지원정책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Gunnarsson, Korpi, & Nordenstam, 1999). 이후 출산율은 다시 하락하여 1998년에는 인구조사통계를 시작한 18세기 이래 가장 낮은 1.5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사회보장 재정삭감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실업이 출산율 증가를 유발하지만, 당시 스웨덴 실업여성들은 첫아이 출산을 늦추고, 둘째나 셋째 아이를 갖는 것도 주저했다. 2000년 이후에는 출산

율이 다소 회복세를 나타내어 2003년 현재 출산율은 1.65로서, 우리나라(1.19)나 이탈리아(1.24), 독일(1.29)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출산을 변화와 더불어 평균 수명의 증가는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고 아동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였다.

## 2. 가족형태의 변화

지난 수십 년간 스웨덴의 가족 형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첫째, 이혼이나 별거의 증가이다. 스웨덴의 이혼율은 세계 2위로서 아동의 1/3이 17세가 되기 전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아동의 1/4 미만이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산다(Hessle, Ioka, & Yamano, 1998). 둘째, 동거가족의 증가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거가족을 결혼가족과 유사하게 만드는 동거법이 1987년 의결되었고(Swedish Institute, 2004) 인구센서스에서도 ‘가족’을 결혼을 했든 안했든 그리고 자녀가 있든 없든 2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Hessle et al., 1998) 동거가 정상적인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OECD, 1999; Swedish Institute, 2004). 셋째, 가족 규모의 축소이다. 스웨덴에서 무자녀 가족이 32.2%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1-2 명이다([http : //www.sungshin.ac.kr](http://www.sungshin.ac.kr)). 그러므로 스웨덴 보육시설에서 혼합연령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양성평등

스웨덴에서는 내각각료 22명의 절반인 11명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다. 또한 여성의 약 80%(남성은 84%)가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성별 임금격차(남성 24,100 SEK, 여성 20,000 SEK)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Kim, 2004; Swedish Institute, 2004). 스웨덴이 세계 최고의 양성평등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개인은 유급노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남녀 모두 취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한 양성평등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왔기 때문이다(Bjornberg & Dahlgren, 2003; Swedish Institute, 2004).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실제로 오늘날 스웨덴 남성과 여성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아버지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데리고 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한 일시적 부모급부도 거의 어머니(57%)만큼 아버지(43%)들이 사용하고 있다(Swedish Institute, 2004).

## 4. 아동의 지위

전통적으로 스웨덴에서는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존중해왔으며, 양육방법에도 이러한 전통이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1979년 이후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었고, 권위주의적 양육방법을 사용하는 부모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또한 모든 아동은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안전하게 느낄 권리가 있으며,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놀림이나 모욕을 받는다면 그 기관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실패한 것이라고 여길 만큼 스웨덴에서 아동은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National report of Sweden, 1999).

또한 스웨덴에는 부모의 취업여부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주의 보육이념이 일찍이 확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공적 기금에 근거한 공보육 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다(Gunnarsson et al., 1999).

그러나 다음 면담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육제도를 발달시켜 왔던 초창기와 달리, 오늘날에는 부모를 지원하는 입장을 초월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기 위해서 보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50년 전에는 주로 일하거나 공부하는 부모를 위해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냈으나 지금은 아동의 권리를 위해 보육시설에 보냅니다. 즉, 4세 이상의 모든 아동은 하루 3시간 무료로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육개념이 부모의 권리에서 아동의 권리 위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부이면 아이는 같이 놀 친구가 없습니다. 예전과는 매우 다른 아이들 세상입니다. 아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이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Göteborg대학 I.P.Samuelsson 교수)

## 5. 가족지원 정책

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가족수당보다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공보육이 더 높은 정책적 비중을 차지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김수정, 2002). 그러나 영아의 경우 시설보육보다 육아휴직을 유도하는 등 가족지원정책은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법은 임신과 출산시의 휴가와 휴직 권리를 보장하며, 부모보험법은 육아휴직 기간 중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를 보상한다. 부모보험은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50일간 급여의 80%를 지급받는 임신급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3), 출산이나 입양으로 인한 육아휴

직 시 16개월간(13개월은 소득의 80%, 이후는 일 60 SEK씩) 소득을 보상받는 부모급부 그리고 자녀가 아플 경우 60일까지 소득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일시적 부모급부(National Social Insurance Office, 2003) 등으로 구성되며, 아버지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권장, 유도하고 있다. Lidin 가족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저(남편, 40세)는 고등학교 교사이며, 아내(40세)는 육아휴직중입니다. 아내는 출산 전 서점에서 일할 때 월급 16,000 SEK의 80%인 12,800 SEK을 매달 보상받고 있는데, 막내 Rakel(11개월)가 첫 돌이 되면 복직할 예정이에요. 저(남편)는 다른 애들(3세, 5세)때에는 6개월씩 육아휴직을 했지만, 이번에는 내년에 주 2일씩 1년간 나누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직장을 오래 쉬는 것보다 이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저희부부는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융통성이 있어 만족하고 있어요.”(Lerum 거주 Lidin가족)

이외에도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계좌로 자동 지급되는 아동수당, 혼외관계이거나 이혼 또는 별거 중인 경우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부양수당과 장애아동 수당, 보조인 수당, 아동연금, 주택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가 수립되어 있다(Årsbok för Sveriges Kommuner, 2004).

## IV. 스웨덴 보육의 주요정책

### 1. 보육행정체계

스웨덴에서는 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복지체제로 통합하여 복지부에서 보육업무를 주관해 왔다. 그러나 유아를 위한 기관에서 교육이 강조되

고 학교에서의 보호적 측면이 강화됨에 따라 1996년 보육주무 부서가 교육부로 이관되고, 교육부 산하의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과 ‘국립학교진흥원’(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또한 기본적인 보육정책은 국가에서 수립하지만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감독 등 실질적인 보육업무는 289개의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① 아동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해주고(스톡홀름 3개월, 예테보리 4개월), ② 지역 내에 보육 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③ 원장을 임명하고 보육교사를 고용, 급여를 지불하며, 보육교사를 양성, 재교육하고, ④ 재정적 지원과 부모부담 보육료를 결정하고, ⑤ 보육시설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 2. 보육관련법규

스웨덴에서 보육시설은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체제 안에 포함되고 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교육법은 지자체는 부모가 취업이나 학업을 하기 위해 1-12세 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지자체는 4-5세의 모든 아동에게 연간 525시간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한편 교육법은 보육시설의 운영과 규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사 대 아동 비율, 학급 크기 등에 대한 국가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규정하는 법규는 명명보다는 권고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보육에 관한 문제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른다(양옥승 외, 2002).

또한 1998년 초·중등학교들의 교육과정과 독립된 국가수준의 취학전 교육과정이 최초로 만

들어졌다. 이는 보육의 지위를 초등학교와 동등하게 하며, 보육시설에서 교육의 역할을 보다 확고히 하고, 모든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박은혜·김명순·신동주·정미라, 2000). 한편 취학전 교육과정은 프리스쿨에서 아동에게 가르쳐야 하는 기본 가치와 활동의 과제, 전반적인 목표 및 방향은 명시하고 있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Alvestad & Samuelsson, 1999). 즉, 각 발달 영역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동이 프리스쿨에서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배우고 발달하도록 하는 목표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NAE, 2003).

## 3. 재정

### 1) 지원방식

과거에는 국가가 지자체에 보육, 학교, 노인복지 등 항목별로 재정지원을 하였지만(Pestoff & Strandbrink, 2002), 1990년대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사회서비스 전체에 대해 일괄적인 기금을 제공하는 블록지원(block grant)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당시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곤란과 항목별 지원이 비효율적이며 보육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분석에 의해 도입된 블록지원은 지자체로 하여금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하였다(Gunnarsson et al., 1999). 한편 지자체마다 세율(소득의 27%-34.4%)이 차이가 있어(Gunnarsson et al., 1999) 보육의 지역차가 심화되자 정부는 지방세수입동일화제도(income levelling system)를 통해 보육재정이 충분한 지자체가 그렇지 못한 곳에 예산을 재분배해주도록 하고 있다(OECD, 1999).

〈표 2〉 예테보리 지자체의 보육료(SEK)

출생순위	0-3세	출생순위	4-5세
1	1,260 또는 소득의 3%	1	840 또는 소득의 2%
2	840 또는 소득의 2%	2	420 또는 소득의 1%
3	420 또는 소득의 1%	3	420 또는 소득의 1%
4	무 료	4	무 료

또한 예전에는 법적으로 사립보육시설이 공적 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1991년 이후 지자체는 사립보육시설에게도 기금을 보조하고 있다 (Bjornberg & Dahlgren, 2003). 그리고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시설별로 균등하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으나 바우처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아동수에 따라 지원하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아동별 지원방식을 도입한 목적은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육시설 간의 경쟁력을 강화 시킴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다음 면담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지자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원방식은 차이가 있다.

“보수당은 부모의 선택권을 중시하여 바우처를 통한 지원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시민당은 공보육시설의 설립에 초점을 두며 시설별 지원 방식을 옹호합니다.”(보수당 소속 의원 Mats Gerda)

2) 보육료 결정

1990년대의 경기침체와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1991년 10%이던 부모분담률은 2001년 18%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2년 보육료상한제(maximum fee)가 도입되어 부모의 보육비용 분담비율은 다시 11%까지 낮아졌다. 2004년 현재 보육료상한제(Swedish Institute, 2004)에 의하면, 첫째 자녀의 경우 소득의 3% 또는 월 1,260 SEK 중 적은 액수로 보육료가 책정된다. 그리고 둘째 자녀는 월 840 SEK 또는 소득의 2%, 셋째 자녀는 월 420 SEK 또는 소득의 1% 이

내에서 보육료가 결정되며, 넷째 자녀 이하는 무료이다. 이와 같은 보육료 상한제라는 큰 틀 안에서 지자체는 재량권을 가지고 부모의 보육료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테보리 지자체는 연령별 차등을 두어 3세 미만 아동과 3세 이상 아동의 보육료 상한액을 다르게 산출하며, 아동의 출생순위와 부모의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되 보육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카 지자체는 보육료를 아동의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 대신, 보육유형별 그리고 보육시간별 차등을 적용하고 있다. 즉, 보육료 상한제 기본방침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결정방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육료 상한제는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감소시키고 보육수요의 증가를 가져왔다.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의 감소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 감소를 보상하고, 보육아동 수의 증가로 인한 보육의 질 하락(예, 교사 대 아동 비율 증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http : //www.skolverket.se).

〈표 3〉 나카 지자체의 보육료(SEK)

주당 보육시간	출 생 순 위			
	1	2	3	4
20-25시간	850	567	283	0
26-35시간	950	633	317	0
36시간 이상	1,260	840	420	0
육아휴직 부모의 경우 주당15시간	850	567	283	0
실직자 부모의 경우 주당 15시간	850	567	283	0

#### 4. 교사

##### 1) 교사의 유형과 자격 요건

스웨덴에서 공립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으며, 크게 유아교사, 보조교사, 가정보육모, 레크레이션교사로 분류된다. 먼저, 유아교사(förskollärare)는 대학 졸업 후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병설 유아학급에서 1세~6세 아동을 담당한다. 또한 학령기 보육시설인 레저타임센터에서도 일할 수 있으며(NAE, 2003),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있다.

보조교사(barnskötare)는 고등학교에서 3년간 아동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전공하거나 지자체 운영 성인교육기관에서 1년간 보조교사과정을 이수한 후 보육시설에서 유아교사와 팀을 이루어 일한다. 레저타임센터에서는 근무하지 못하며, 자녀를 갖게 되면 자기 집에서 가정보육모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신동주,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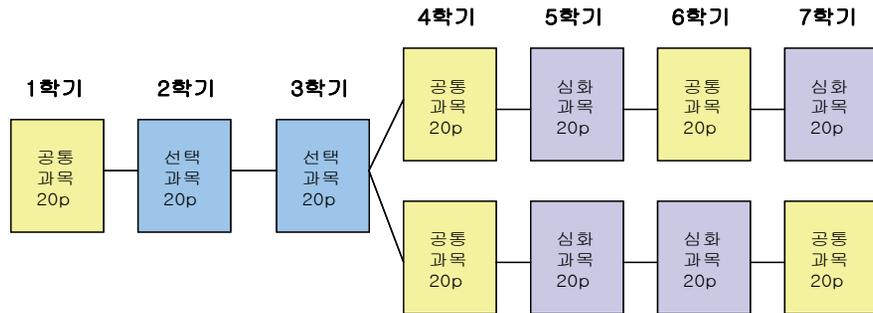
가정보육모(dagbarnvårdare)는 공식적 교육은 안 받았으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정 시간 훈련을 받고 자기 집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1-12세의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을 다양한 시간대에 돌본다. 지자체가 채용하여 보수를 주는 제

도화된 가정보육모, 지자체의 인가와 감독을 받는 사립 가정보육모, 완전히 사적으로 일하는 가정보육모 등이 있다.

레크레이션교사(fritidspedagog)는 대학교육을 받고 주로 레저타임센터에서 학동기 아동의 보육을 담당하지만, 유아교사와 함께 취학전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레크레이션을 지도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이나 비구조화된 활동을 제공한다(NAE, 2003).

##### 2) 통합적 교사 양성과정

유아교사는 초등교사와 다른 과정의 교육을 받았고 교육연한도 6개월 짧았으나(Moss, 2000) 2001년부터 유아교사와 초등교사, 그리고 레크레이션교사 등 모든 교사의 교육과정이 3.5년으로 통합되면서(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2000), 모든 졸업생이 ‘교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교사교육에서는 교과과정을 공통 과목, 선택과목, 심화과목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유아교사, 초등교사, 레크레이션교사, 중등교사 등 기존의 8가지 교사자격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즉, 모든 유형의 교사는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저학년에서는 공통적으로 기본과목을 이수하고, 이후 고학년에 가서 전공영역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된다.



〈그림 1〉 새로운 교사교육의 학기 구성  
 자료 : www.lararhogskolan.se

공통과목 영역(60 credit)은 교수법, 특수교육, 유아와 청소년 발달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실습이 10 credits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선택과목 영역(40 credits)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교사유형을 전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대상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과목들로 구성되며, 역시 10 credits은 현장실습이어야 한다. 유아교사와 초등저학년 교사는 상당수 선택과목을 공유하고 있다. 심화과목(20 credits)은 학생들이 이전에 취득한 지식을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과목들이다.

## V. 스웨덴 보육의 유형

### 1. 프리스쿨(Preschool)

프리스쿨은 초등학교나 유아학급에 다니기 전의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육유형으로서 종일제로 운영된다. Stockholm의 경우, 프리스쿨의 88%가 오전 7시 이전에 시작하고 거의 모든 프리스쿨이 오후 6시 이후까지 운영한다(<http://sirir.skolverket.se>).

프리스쿨 프로그램의 주요 특성은 비형식적인 활동, 놀이중심 활동, 자연친화적 활동, 부모의 적극적 참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프리스쿨에는 1-4개의 학급이 있고, 각 학급은 평균 15명의 혼합연령 아동으로 구성된다(Kammerman, 2000). 3세 미만 집단과 3-5세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때로는 1-5세까지 혼합연령집단으로 조직된다(Kärby, 2002). 또한 일반적으로 한 학급에는 2명의 정교사와 1명의 보조교사 등 3명이 팀을 이루어 일을 한다. 그러나 교사 3명 모두 유아교사인 경우도 있고, 유아교사 1명이 보조교사 2명이 팀을 구성하기도 한다. 팀티칭으로 인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평균 1 : 5.3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NAE, 2003). 프리스쿨이 차지하는 대지면적이나 건물의 크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지만, 시설정원은 평균은 42명으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Pestoff & Strandbrink, 2002).

### 2. 개방형 프리스쿨(Open preschool)

개방형 프리스쿨(open preschool)은 일종의 드롭인서비스(drop-in service)로서 전업주부나 가정보육모가 돌보는 아동들에게 사회적, 교육적 자극을 제공한다. 개방형 프리스쿨은 1972년 설립된 이후 한동안 프리스쿨에 자리가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아동이 머무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개방형 프리스쿨은 대부분 무료이며, 시간제로 운영된다. 시설마다 주 1회에서 5회까지, 그리고 하루 몇 시간에서 종일에 이르기까지 운영시간이 다양하나 점차 운영시간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시간이 달라지므로 방문자 수도 매일 다르다. 다른 보육유형보다 비형식적인 특성이 있으며, 아래 면접과 같이 부모나 가정보육모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저는 아이가 셋 있는데, 두 아이(3세 남아, 1.5세 여아)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점이 마음에 들고, 선생님들이 좋습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만나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활동은 만들기, 그림, 빵 만들기입니다.”(나카 지자체 Forsamling 개방형 프리스쿨 이용 어머니 Pia)

이와 같이 개방형 프리스쿨은 부모나 가정보육모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며, 특

히 비취업 부모나 육아휴직 부모에게 가족지원 센터로서 기능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개방형 프리스쿨이 사회복지나 모자보호 및 보건서비스 등의 공적 기구와 협력한다. 예테보리 지자체의 Hammarkullen 개방형 프리스쿨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아를 위한 마사지 프로그램 : 교사의 시범 하에 부모가 아이에게 마사지 실시.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미술 활동 : 주 1회 외부 미술 강사가 방문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운동 프로그램 : 강사의 시범에 의해 실시
- 부모를 위한 운동프로그램 : 아버지가 퇴근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저녁 7시에 배정
- 부모가 직업을 갖도록 안내하는 프로젝트 : 직업상담원과 연결

### 3. 가정보육(Family daycare)

스웨덴에서 가정보육 시설을 운영하려면, 가정보육모의 집은 지자체의 조사를 받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NAE, 2003). 특히 공립 가정보육모는 지자체에 고용되고 급여를 받는 대신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 사립 가정보육모의 경우 공적 규제를 받지 않고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형도 있지만, 지자체의 인가를 얻고, 관리·감독을 받는 유형도 있다(Moss, 2000).

“저는 예테보리지자체 A 구역의 가정보육모 45명을 관리하는 가정보육지도원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가정보육모들은 7개의 집단으로 조직되며, 각 집단에는 리더가 1명씩 있습니다. 집단을 구성할 때는 보육의 질이나 마케팅에 전문적인 사람이 1명씩 포함되도록 합니다. 리더는 저와 한 달에 1번 만나 회의를 합니다. 저는 가정보

육시설을 방문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도와 줄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또 가정보육을 처음 받는 아동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부모와 가정보육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요. 월 1회 저녁시간에 가정보육모를 만나 회의를 하거나 훈련을 하고, 1년에 공식적 연수와 파티(혹은 야유회) 등의 이벤트를 각기 4회씩 제공합니다.”(예테보리 지자체의 가정보육지도원 Ann-Marie)

가정보육모들 자신의 자녀도 함께 돌보는 수가 많은데, 이 경우 지자체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포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Pestoff & Strandbrink, 2002). 가정보육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1-12세)이 함께 보육된다. 운영시간은 부모의 스케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있다. 가정보육을 받는 아동도 등록을 해야 하며, 프리스쿨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보육료가 산정된다. 그러나 취학전 교육과정(Lpfö 98)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국립교육원이 지침을 제공한다. 가정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를 다음의 면담 사례와 같다.

“1980년대 이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가정보육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는 근처에 프리스쿨이 없기 때문에 가정보육이 많지요. 그리고 시설보육에 비해 소집단으로 보육된다는 점,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 집 가까이 있어 차를 타지 않아도 편리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점, 가정보육모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이어서 마음이 놓인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립교육원 공무원 G. H. Blix)

### 4. 레저타임센터(Leisure-time center)

학령기 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보육시설인 레저타임센터는 지난 10년간 스웨덴에서 가장 높

은 성장을 보인 보육유형이다. 레저타임센터에 등록된 아동의 수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이전에 프리스쿨에서 종일제 보육을 받던 6세 아동들이 유아학급의 도입으로 반일제 유아학급이 끝나면 레저타임센터를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레저타임센터는 아동의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예, 아침, 방과 후, 휴일)에 부모가 일어나 공부를 해야 할 경우 보육을 제공해준다. 즉, 6-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보육으로서 연중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부모의 스케줄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프리스쿨이나 가정보육과 마찬가지로 보육료는 가족의 수입과 보육시간에 의해 정해진다.

레저타임센터를 위해 국정 의무교육 교육과정(Lpo 94)이 개정된 바 있으며, 스웨덴의 레저타임센터의 교사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대학수준의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http : //www.oecd.org](http://www.oecd.org)). 또한 레저타임센터는 독립적인 센터로 운영될 수도 있으나 초등학교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레저타임센터는 학교를 보충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며, 다음과 같이 아동의 발달을 돕고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레저타임센터는 그냥 일반 학교가 아님니다. 스웨덴에서 자유시간을 뜻하는 프리티드(fritid)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축구하고 싶어 하는 아이는 축구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놀고 싶은 아이들은 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옳은 일을 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법을 매일 배우는 일입니다.”(레저타임센터 교사 I.Strand)

“우리는 Simon(남 13세, 5학년), Joel(남 10세, 3학년), Lina(여 7세, 1학년)등 삼남매입니다. 우리 모두 아침 6시 30분 경 일어나서 학교에 갑니다. 1시 30분 학교가 끝나면 부모님이 데리러 올 때까지(보통 4.5시 정도이나 늦게는 7시) 레저타임센터에

서 지내지요. 우리 모두 레저타임센터 생활을 좋아합니다. 친구가 있어서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레저타임센터에서는 숙제를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노는 것이 주 일과입니다. Joel은 축구를 Lina는 노래와 율동을 하면서 놀고요, Simon(녀성마비) 역시 레저타임센터에서 지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스톡홀름 거주 Fröding 가족)

## VI. 스웨덴 공보육의 실태

NAE(2003)에 의하면, 현재 스웨덴에는 371,000명의 취학전 아동과 359,000명의 학령기 아동 등 총 730,000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표 4>와 같이 이를 연령별 인구대비에 따라 살펴보면, 4세와 5세 아동의 보육률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다. 이에 비해 1세 아동의 보육률은 50% 미만이며, 1세 미만 아동의 보육률은 0%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방형 프리스쿨은 정규적인 출석이 요구되지 않고 아이들이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 아동 수에 대한 전국 통계는 존재하지 않고 개방형 프리스쿨의 수와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만이 있다. 개방형 프리스쿨을 제외한 취학전 아동의 보육률을 보육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가정보육보다는 프리스쿨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많다. 가정보육에 등록된 아동은 1997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으며, 특히 육아휴직이 가능한 1세 미만 아동과 6세 아동에게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 프리스쿨의 연령별 등록율은 1세 미만 0%, 1세 40%, 2세 75%, 3세 80%, 4세 83%, 5세 84% 등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다. 또한 프리스쿨에 등록된 아동은 333,600명으로 2001년의 315,000명보다 6% 증가했으며, 모든 연령에

〈표 4〉 보육유형에 따른 아동의 연령별 보육률

		1세 미만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취학전 보육	프리스쿨	0.0	39.9	75.3	79.6	82.8	84.0	2.3	0.3
	가정보육	0.0	5.4	9.4	9.3	8.7	8.2	.	.
	계	0.0	45.3	84.6	88.8	91.5	92.2	2.3	0.3
학령기 보육	레저타임센터	.	.	.	.	.	0.7	78.7	79.7
	가정보육	.	.	.	.	.	.	2.3	1.7
	계	.	.	.	.	.	0.7	81.0	81.3

자료 : Sverigies officiella statistik(2004)

서 보육률이 68%에서 72%로 증가하였다. 프리스쿨에 다니는 아동 수의 증가는 실직 부모(2001년부터)와 육아휴직 부모에게도(2002년부터) 프리스쿨 등록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NAE, 2003).

학령기 보육인 레저타임센터에 등록된 아동의 수는 1970년대 이래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2년 현재 350,744명의 아동이 레저타임센터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는 1990년의 세 배가 넘는 수치이다. 레저타임센터에 등록된 아동의 수가 증가한 이유는 프리스쿨에서 종일제 보육을 받던 6세 아동들이 교육부 이관과 더불어, 초등학교에 병설된 반일제 유아학급에 다니게 됨에 따라 방과 후에 레저타임센터를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NAE, 2003).

〈표 5〉 시설별 운영형태

		시설 수	아동 수
프리스쿨	공 립	6,371	277,882
	사 립	2,214	55,764
	계	8,585	333,646
레저타임센터	공 립	4,153	322,723
	사 립	414	28,021
	계	4,567	350,744

자료 : Sverigies officiella statistik(2004)

또한 스웨덴에서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공립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다. <표 5>를 보면 취학전 아동을 위한 프리스쿨의 경우 공립시설의 수가 사립시설의 수보다 3배 정도 많고,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해도 공립시설을 다니는 아동이 사립시설에 다니는 아동보다 5배 정도 많다. 학령기 아동을 위한 레저타임센터의 경우는 시설 수나 아동 수 모두 공립이 사립의 10배 정도로 그 차이가 훨씬 더 현저하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공보육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민당이 오래 집권한 스웨덴에서 사립보육은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져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었다. 보편주의적인 사회정책을 택하는 시민당의 노선에서 볼 때 사립보육은 시민당을 약화시키려는 우익의 시도로 이해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웨덴에는 공보육이 보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보육시설을 설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85년 이후 사립보육시설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1988년에 500개에 불과하던 사립보육시설이 1995년 말에는 1,900개로 4배 정도 늘어났다. 또한 사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도 1988년 8,500명에서 1999년 47,000명으로 증가하였다(Pestoff & Strandbrink, 2002). <표 6>과 같이 2002년 현재 프리스쿨에 등록된 아동의 17%(55,764명)가 사

〈표 6〉 사립보육 아동의 수와 사립보육 아동의 비율<sup>a</sup>

	프리스쿨		가정보육		레저타임센터	
	사립보육 아동의 수	사립보육 아동의 비율	사립보육 아동의 수	사립보육 아동의 비율	사립보육 아동의 수	사립보육 아동의 비율
1998년	44,876	13.3	2,844	3.5	13,701	4.6
1999년	47,155	14.8	3,483	5.0	22,540	6.8
2000년	48,717	15.5	3,562	6.2	25,355	7.6
2001년	52,304	16.6	3,622	7.3	24,995	7.4
2002년	52,764	16.7	3,666	8.1	28,021	8.0

<sup>a</sup>전체 보육아동 중 사립보육을 받는 아동의 비율  
자료 : NAE(2003).

립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사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jornberg & Dahlgren, 2003). 또한 사립보육시설의 이용 빈도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서 주로 대도시지역에 흔하다. 예를 들어, Uppsala에서는 1/4의 아동이 사립 보육을 받은 반면, Västerbotten에서는 그러한 아동이 1/20에 불과하다(Pestoff & Strandbrink, 2002). 스웨덴의 289개 지방자치단체 중 65곳은 2002년 현재 사립보육시설이 전혀 없다(NAE, 2003).

또한 스웨덴 공보육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의 부족이 이용자 간의 차이를 만들어 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공보육이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던 1970년과 80년대에는 주로 학자, 고급 공무원이나 회사원, 사무직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공보육을 많이 이용하였다. 반면, 1987년과 1995년 사이 보육 서비스가 팽창되었던 시기에는 육체노동자, 편부모 가정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이 공보육을 많이 이용하였고, 양부모 가정과 고학력 가정은 사립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는 사회적 특권이 많은 가족일수록 복지시스템의 혜택을 받기 쉬움을 의미한다(Pestoff

& Strandbrink, 2002).

## VI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적절한 공보육 모델을 설정하고 보육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보육선진국 스웨덴 공보육의 배경, 주요 정책, 유형, 실태 등을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의 공보육제도의 발전은 출산율과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노동력을 산업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편주의 보육이념에 따라 공보육을 구현한 오늘날에는 부모의 일할 권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한다는 보다 상위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주의 보육이념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당장 시급한 출산율 제고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동들의 보호

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공보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옥, 1996; 이옥, 2004).

한편 스웨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보육이란 국가와 부모가 공동의 책임과 협력으로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이는 공보육의 정책을 보육시설에 의한 교육과 보호의 서비스의 제공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영아의 경우 시설보육보다 양육수당이나 유급육아휴직의 활성화를 통해 가정에서의 양육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지원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스웨덴과 같이 양성평등 차원에서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육업무의 이관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스웨덴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및 여성부 이관으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현실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웨덴에서 보육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추적인 업무임에 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까지 보육을 국가의 지침과 보조금에 따라 수행하는 주변업무 정도로 취급해 온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중심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이 분권화는 지역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각 지역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어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면서도 지역차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는 스웨덴의 보육정책을 우리나라 보육정책 입안 시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차등보육료 제도를 설계할 때 스웨덴의 보육료 상한제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별 지원 역시 스웨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학전 보육시설의 유아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보육교사의 교육과정을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각 기관간의 긴밀성을 높이고 유아교사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한 새로운 교사양성제도도 보육교사가 초중등교사는 물론이고 유치원교사와도 다른 교육과정에 의해 양성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격 여건, 처우 등이 문제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넷째, 다양한 보육 욕구의 충족 및 보육시설의 다양화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취업과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프리스쿨과 같은 종일제 시설이 늘어나야 하지만, 이외에도 개방형 프리스쿨과 같은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무시되어 왔던 놀이방도 스웨덴처럼 시설보육의 틈새를 보완하고 가정보육시설로서의 역할과 위상 정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스웨덴 공보육의 발전 과정에서 보육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공보육을 수혜 받았지만, 이후 공보육이 보편화된 단계에 이르자 이들은 보다 질 높은 사보육을 이용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아동들이 공보육 대상이 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사회적 특권이 많은 가족일수록 복지 시스템의 혜택을 받기 쉬움을 나타내는 이러

한 사례 역시 우리나라에서 보육정책을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하다.

이상과 같이 스웨덴의 사례는 공보육의 이념적 모델을 정립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육정책을 설계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참고로 하여 공보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육의 주무부처인 여성부와 관련부처가, 보육시설과 지역사회가, 보육시설종사자와 가족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육의 주체로서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김수정(2002). 복지국가 가족지원체계의 구조변화에  
관한 일연구 -가족수당과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은혜 · 김명순 · 신동주 · 정미라(2000). 세계의 유  
아교육제도 서울 : 양서원.
- 백진아(2003). 덴마크와 스웨덴의 여성복지 체제. *사회  
이론* 제22호(가을/겨울). 한국사회이론학회, pp.  
235-261.
- 신동주(2002). 스웨덴 공보육의 실상과 동향, *한국영  
유아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양옥승 · 김영옥 · 김현희 · 박경자 · 위영희 · 이옥 ·  
이차숙 · 정미라 · 지성애 · 홍혜경. (1998). *세계  
의 보육제도* 양서원.
- 양옥승 · 이은화 · 조복희 · 최양미(2002). 유아기의  
효율적인 국가 인적자원 개발 · 관리체제 확립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2000-  
일-13.
- 이옥(1996). 스웨덴의 아동유아교육 제도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4(4), 187-202.
- 이옥(2000). 한국 영유아 보육 사업의 이념적 방향과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23집, 1-24.
- 이옥(2004). 아동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방향과 과  
제. 보육지원교수협의회 포럼. 2004년 12월 10  
일. *경희대학교 청운관*, 620호.
- 장미경(1999). 유아교육 시설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  
책 대안 모색 - 미국, 일본, 스웨덴의 사례에 비  
추어. *여성과 사회*, 89-110.
- 정채옥(2000). 유아교육 제도의 발달 과정 고찰(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북한, 우리나라를 중  
심으로). *광신대학교 광신논총*, 9(1), 427-464.
- 정효정(2003). 참여정부의 보육정책과 전망. *한국영유  
아보육학* 35집, 393-405.
- 표갑수(2004). 한국 보육사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일  
본과 한국의 공보육 구현을 위한 전략. 2004년  
추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Alvestad, M., & Samuelsson, I. P.(1999). A comparison  
of the national preschool curricula in Norway and  
Sweden.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1(2)<http : //www.ecrp.uiuc.edu.-Electronic journal>.
- Årsbok för Sveriges Kommuner(2004). *Statistika  
centralbyrån*.
- Bjornberg, U., & Dahlgren, L.(2003). *Policy the case  
of Sweden*. York University : UK.
- Gunnarsson, L., Korpi, B. M., & Nordenstam, U.(1999).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Sweden*.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Stockholm : Sweden.
- Hessle, S., Ioka, B., & Yamano, N.(1998). *Family Policy  
and Child Welfare in Japan and Sweden*. Stock-  
holm University.
- Hofferth, S. L., & Deich, S. G.(1994). Recent U.S. child  
care and family legislation in comparative per-  
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15(3), 424-  
448.
- Kammerman, S. B.(2000).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 An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33, 1.
- Kärby, G.(2002). Report to Internaitonal Country  
Archives(INCA), *Internaiotnal Review of Curric-  
ulum and Assessment Framework Archive Quali-  
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QCA)*.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2000). *Early Childhood*

-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Sweden*. Stockholm, Sweden.
-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2003). *Swedish family polish, Fact Sheet no 14, 2003*, [www.regeringen.se\(2003-10-05\)](http://www.regeringen.se(2003-10-05)).
- Moss, P.(2000). Training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taff,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3, 31-53.
- NAE(2003). *Descriptive data on childcare, schools and adult education in Sweden*. Skolverket.
- National report of Sweden(1999). *National report of Sweden*. Conference of Europ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Family Affairs, XXVI Session. Stockholm, Sweden.
- National Social Insurance Office(2003). *National Social Insurance Office Leaflet*.
- OECD(1999). OECD country note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Sweden*. Paris : OECD.
- Pestoff, V., & Strandbrink, P.(2002). *The politics of Swedish childcare*.
- Sverigies officiella statistik(2004). *Sverigies officiella statistik*.
- Swedish Institute(2004). *Fact-Sheets on Sweden*.  
[http : //www.sungshin.ac.kr/~kowoin/d\\_2b.htm](http://www.sungshin.ac.kr/~kowoin/d_2b.htm)  
[http : //www.skolverket.se/english/system/child.shtml](http://www.skolverket.se/english/system/child.shtml)  
[http : //www.lararhogskolan.se](http://www.lararhogskolan.se)  
[http : //www.skolverket.se/fakta/maxtaxa/index.shtml](http://www.skolverket.se/fakta/maxtaxa/index.shtml)  
[http : //www.siris.skolverket.se/pls/portal30/PORTL30.siris\\_frame.siris](http://www.siris.skolverket.se/pls/portal30/PORTL30.siris_frame.siris)  
[http : //www.oecd.org/dataoecd/44/16/1942365.pdf](http://www.oecd.org/dataoecd/44/16/1942365.pdf)

2004년 12월 31일 투고 : 2005년 3월 21일 채택